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2차 B-5블록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THE SHARP · DESIAN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사송 더샵 데시앙 2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오픈시 관람 인원 제한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http://www.sasong-thesharpdesian2.co.kr)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비 접촉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 37.5도 이상일 경우 * 손 소독, 발 소독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송 더샵 데시앙 2차"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55-366-4040)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6.1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양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적용 주택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7.02)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2.)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은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마감시간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06월 22일(월)	06월 23일(화)	06월 24일(수)	07월 02일(목)	07월 13일(월) ~ 07월 16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송더샵데시앙2차 견본주택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10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202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 공동주택과 – 20350호 (2020.06.11.(목))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사송택지개발지구 B-5BL**
- **공급규모 : B-5BL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5개동 총 477세대**
  [특별공급 205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48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4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95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B-5BL 2023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B-5BL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일반분양세대수	저층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20000644	01	074.9913	74	74.9913	23.4245	98.4158	46.9051	145.3209	49.4399	142	14	14	28	4	60	82	7
		02	084.9364A	84A	84.9364	25.7764	110.7128	53.1255	163.8383	55.9965	238	24	24	48	7	103	135	10
		03	084.9865B	84B	84.9865	26.5098	111.4963	53.1569	164.6532	56.0295	97	10	10	19	3	42	55	4
합 계											477	48	48	95	14	205	272	21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B-5BL (단위 : 원)

주택형	동호구분	층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차 계약시	계약금 2차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 1차(10%) 2020-10-22	2차(10%) 2021-03-15	3차(10%) 2021-07-15	4차(10%) 2021-11-15	5차(10%) 2022-03-15	6차(10%) 2022-07-15	잔금(30%) 입주지정일
074.9913	503동 1,2,3호 504동 1,2호 505동 1,2호	2층	7	74,159,850	228,840,15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3층	7	74,159,850	238,840,150	313,000,000	10,000,000	2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93,900,000
		4층	7	74,159,850	240,840,150	315,000,000	10,000,000	2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94,500,000
		5~8층	28	74,159,850	245,840,150	320,000,000	10,000,000	2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96,000,000
		9~16층	56	74,159,850	248,840,150	323,000,000	10,000,000	2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96,900,000
		17~20층	28	74,159,850	251,840,150	326,000,000	10,000,000	2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97,800,000
		21층이상	9	74,159,850	254,840,150	329,000,000	10,000,000	2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98,700,000
084.9364A	501동 1,3,4,5호 502동 1,2,3,5호	1층	3	83,994,750	250,005,250	334,000,000	10,000,000	2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200,000
		2층	7	83,994,750	257,005,250	341,000,000	10,000,000	2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102,300,000
		3층	8	83,994,750	268,005,250	352,000,000	10,000,000	2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4층	8	83,994,750	270,005,250	354,000,000	10,000,000	2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106,200,000
		5~8층	32	83,994,750	276,005,250	360,000,000	10,000,000	2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9~16층	64	83,994,750	279,005,250	363,000,000	10,000,000	2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108,900,000
		17~20층	32	83,994,750	283,005,250	367,000,000	10,000,000	2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10,100,000
		21층이상	36	83,994,750	287,005,250	371,000,000	10,000,000	2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11,300,000
	503동 5호 504동 4호	1층	1	83,994,750	256,005,250	340,000,000	10,000,000	2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102,000,000
		2층	2	83,994,750	263,005,250	347,000,000	10,000,000	2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104,100,000
		3층	2	83,994,750	274,005,250	358,000,000	10,000,000	2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107,400,000
		4층	2	83,994,750	276,005,250	360,000,000	10,000,000	2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5~8층	8	83,994,750	281,005,250	365,000,000	10,000,000	2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109,500,000
		9~16층	16	83,994,750	285,005,250	369,000,000	10,000,000	2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10,700,000
		17~20층	8	83,994,750	288,005,250	372,000,000	10,000,000	2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21층이상	9	83,994,750	292,005,250	376,000,000	10,000,000	2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084.9865B	501동 2호 502동 4호	1층	3	84,044,250	252,955,750	337,000,000	10,000,000	2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101,100,000
		2층	2	84,044,250	259,955,750	344,000,000	10,000,000	2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103,200,000
		3층	2	84,044,250	270,955,750	355,000,000	10,000,000	2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4층	2	84,044,250	272,955,750	357,000,000	10,000,000	2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7,100,000
		5~8층	8	84,044,250	277,955,750	362,000,000	10,000,000	2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9~16층	16	84,044,250	281,955,750	366,000,000	10,000,000	2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109,800,000
		17~20층	8	84,044,250	284,955,750	369,000,000	10,000,000	2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10,700,000
		21층이상	10	84,044,250	288,955,750	373,000,000	10,000,000	2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503동 4호 504동 3호	1층	1	84,044,250	257,955,750	342,000,000	10,000,000	2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102,600,000
		2층	2	84,044,250	264,955,750	349,000,000	10,000,000	2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04,700,000
		3층	2	84,044,250	275,955,750	360,000,000	10,000,000	2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4층	2	84,044,250	277,955,750	362,000,000	10,000,000	2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5~8층	8	84,044,250	283,955,750	368,000,000	10,000,000	2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10,400,000
		9~16층	16	84,044,250	286,955,750	371,000,000	10,000,000	2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11,300,000
		17~20층	8	84,044,250	290,955,750	375,000,000	10,000,000	2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21층이상	9	84,044,250	294,955,750	379,000,000	10,000,000	2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113,7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층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정확하되 소수점 4자리로 생략된 것으로 보임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 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해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	074.9913	084.9364A	084.9865B
약식표기	74	84A	84B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은 추후 부과되는 상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며 대출에 따른 제반사항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74	84A	84B
일반(기관추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포함)	2	2	1
		장기복무제대군인	1	2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1
	중소기업근로자		1	1	1
	장애인	경상남도	4	8	2
		부산광역시	3	6	2
		울산광역시	2	3	2
다자녀가구			14	24	10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공급(75%)	21	36	15
		일반공급(25%)	7	12	4
노부모부양			4	7	3
합 계			60	103	4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경상남도(양산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추천기관별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②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중소기업근로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④ 장애인 : 경상남도 – 경상남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부산시 – 부산광역시청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 울산시 – 울산광역시청 복지여성건강국 장애인복지과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다수 이거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자녀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3% 이내)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자 ② 가점제 적용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로 산정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은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인 자에게 일반공급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로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무주택자로 한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 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 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액(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자소득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① 견본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에 거주자가 우선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순위별 적용기준" 등을 확인 바람.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1순위 ①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함 ②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1순위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아래 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 초과	• 청약신청 시 모두 추첨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인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이상~만30세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	–	
③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

구 분	신 청 자 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②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④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IV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6.22.(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0.06.23.(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0.06.24.(수)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허용합니다.(견본주택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거나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표시되어야 함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V 당첨자 발표 및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20.07.02(목)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상기 장소 외 개별 통지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거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보다 많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당첨일로부터 3일 내 참석의사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7.02(목) ~ 2020.07.11.(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예비자
	제공일시	2020.07.0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2020.07.02.(목) ~ 2020.07.08.(수) / 10:00 ~ 16:00
제출처	– 당사 견본주택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10번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2.)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 비 서 류
공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본인 발급분만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제출서류**
  -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 **일반공급 중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 비 서 류	비고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일반공급 중 추첨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 비 서 류	비고
일반공급 (추첨제, 예비입주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7.13.(월) ~ 2020.07.16.(목) 10:00 ~ 16:00	사송더샵데시앙2차 견본주택(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10번지)

※ 당첨자는 당첨 동,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 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1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 접수시에만 해당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불가 –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필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은 취소되며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후 일정 기간 내 동·호수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소유 기준일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분양권등 – 공급계약체결일 등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신한은행	100-034-411931	아시아신탁(주)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체결시 세대별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해당계좌는 상기 오계좌로 자동이체되어 관리가 됩니다.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501동 1403호 홍길동 : 5011403홍길동 / 502동 201호 홍길동 : 502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곳에 납부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을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B-5BL 2023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VII 추가선택품목 계약

-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구,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분양금액 및 공급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품목 상세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바닥재(마루, 타일(욕실, 발코니), 현관바닥 마감재 등 일체), 굽틀,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2) 벽	해당부위 벽체마감(욕실벽지, 타일, 인조석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도장	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석고보드 마감
3)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해당부위), 발코니 천장도장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천장틀 위 석고 보드 마감
4) 조명기구	전체 조명기구(부착형, 매입형) 및 각종 스위치 등	전기 배관/배선
5) 욕실	천장, 타일,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해당욕실)), 샤워부스(해당욕실), 욕실장, 욕실환풍기, 콘센트, 바닥배수구커버, 욕실액세서리일체, 수전류, 젠다이,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등	액체 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6) 주방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및 가전기기(쿡탑, 후드 등), 벽 마감,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기타 주방기전일체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7) 문	문틀, 문선, 문짝 및 경첩 등 문 하드웨어 일체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발코니 내부 PL창호
8) 가구류 및 기타	가구류일체(신발장 포함), 수전류일체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는 발코니확장의 선택은 가능하나, 시스템에어컨 옵션품목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74	84A	84B
마이너스옵션 금액	24,239,000	27,268,000	27,461,000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74	4,600,000	460,000	4,140,000
84A	5,600,000	560,000	5,040,000
84B	5,600,000	560,000	5,040,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에게 일괄 발주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발코니 확장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후 변경 및 해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 대금 납부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신한은행	100-034-412128	아시아신탁(주)	

• 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추가 선택품목**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명칭	옵션분양가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74	선택1	거실+침실1[=총2대]	3,450,000	345,000	3,105,000
	선택2	선택1+침실2,3[=총4대]	6,100,000	610,000	5,490,000
	선택3	선택1+침실통합형1개[=총3대]	4,950,000	495,000	4,455,000
84A	선택1	거실+침실1[=총2대]	3,450,000	345,000	3,105,000
	선택2	선택1+침실2,3[=총4대]	6,100,000	610,000	5,490,000
	선택3	선택1+침실통합형1개[=총3대]	4,950,000	495,000	4,455,000
84B	선택1	거실+침실1[=총2대]	3,450,000	345,000	3,105,000
	선택2	선택1+침실2,3[=총4대]	6,100,000	610,000	5,490,000
	선택3	선택2+알파룸[=총5대]	7,300,000	730,000	6,57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과 침실1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규격	옵션분양가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74	수납 패키지		안방파우더룸, 안방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주방 아일랜드 식탁, 현관창고 선반, 다용도실 세탁 선반	3,600,000	360,000	3,240,000
	침실 패키지	선택1	가변형 벽체 시공(침실2, 침실3)+침실3 붙박이장	900,000	90,000	810,000
		선택2	침실통합형(침실2, 침실3)+드레스룸	900,000	90,000	810,000
		선택3	침실통합형(침실2, 침실3)+붙박이장	1,700,000	170,000	1,530,000
	안방 붙박이장	선택1	TV형	2,200,000	220,000	1,980,000
		선택2	옷장형	2,100,000	210,000	1,890,000
	셰프컬렉션 콤비냉장고		RB33R8796SRL/SR	3,500,000	350,000	3,150,000
	3구 하이브리드쿡탑		NZ63R3301MK	700,000	70,000	630,000
	에어드레서		DF60R8700MG	1,600,000	160,000	1,440,000
	조명결합형 공기 청정기		안방 드레스룸 천장 1EA	300,000	30,000	270,000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1	주방 상판+주방 벽체+아일랜드 식탁 상판(수납 패키지 선택시)	1,350,000	135,000	1,215,000
		선택2	주방 상판+주방 벽체(수납 패키지 미선택시)	1,200,000	120,000	1,080,000
	전열교환기		경동나비엔공기청정 기능 추가	1,000,000	100,000	900,000

[84A 및 84B 기타 추가 선택품목 표 생략 – 원문 참조]

VIII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관련 서류 및 계약관련 서류는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합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휴먼아키피아종합건축사사무소	동양컨설턴트㈜	㈜나라기술단	㈜나라기술단
감리금액	1,482,944,100	424,497,600	92,400,000	123,2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22020-101-0001400호	117,907,3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회사	
상 호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장항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155451	174611-0002979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자재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전력차단장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의 사용여부에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제6조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3항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만족함
제6조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방법 준수		
제6조4호에 의한 방습층의 설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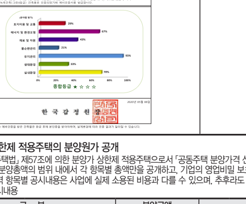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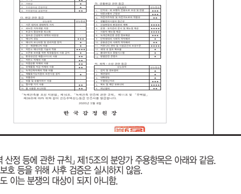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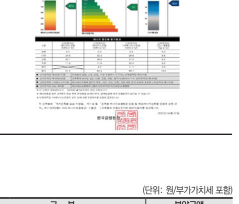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분양가 주용항목은 아래와 같음.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분양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38,673,741,450
		기간이자	0
		필요적 경비	0
		그밖의비용	0
		계	38,673,741,450
공사비	토목	토공사	1,473,000,000
		흙막이공사	1,051,000,000
		비탈면공사	0
		옹벽공사	301,000,000
		석축공사	100,000,000
		우·오수공사	401,000,000
		공동구공사	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0,000,000
		도로포장공사	381,000,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381,000,000
		정화조시설공사	0
		조경공사	3,488,000,000
		부대시설공사	110,000,000
		소계	7,706,000,000
	건축	공통가설공사	3,298,000,000
		가시설물공사	1,283,000,000
		지정 및 기초공사	1,253,000,000
		철골공사	50,000,000
		철근콘크리트공사	23,975,000,000
		조적공사	2,516,000,000
		미장공사	2,075,000,000
		단열공사	772,000,000
		방수·방습공사	1,082,000,000
		목공사	1,914,000,000
		가구공사	2,406,000,000
		금속공사	1,173,000,000
		지붕 및 홈통공사	100,000,000
		창호공사	4,270,000,000
		유리공사	862,000,000
		타일공사	2,506,000,000
		돌공사	1,824,000,000
		도장공사	822,000,000
		도배공사	621,000,000
		수장공사	2,045,000,000
		주방용구공사	0
		그 밖의 건축공사	1,764,000,000
		소계	56,611,000,0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313,000,000
		급탕설비공사	1,123,000,000
		오배수설비공사	2,155,000,000
		위생기구설비공사	1,173,000,000
		난방설비공사	2,115,000,000
		가스설비공사	461,000,000
		자동제어설비공사	100,000,000
		특수설비공사	0
		공조설비공사	282,000,000
		소계	8,722,000,000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3,789,000,000
		정보통신공사	2,295,000,000
		소방설비공사	3,959,000,000
		승강기공사	1,103,000,000
		소계	11,146,000,000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4,380,000,000
		이윤	8,758,258,550
	계		97,323,258,550
간접비		설계비	43,000,000
		감리비	2,150,000,000
		일반분양시설 경비	4,747,000,000
		분담금 및 부담금	7,500,000,000
		보상비	0
		기타 사업비성 경비	4,800,000,000
		계	19,240,000,000
그 밖의 비용			12,618,000,000
합 계			167,855,000,000

- **견본주택 위치 :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10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사송더샵데시앙2차.com ■ 분양문의 : ☎ 055-366-404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055)366-4040

시행/시공 : posco 포스코건설 · TAEYOUNG 태영건설